르엘 대치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25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청약 가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조 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주택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25.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0.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하여 입국 후 7일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 거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8조에 의거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르엘 대치 공급 주택형은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적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미발생된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제2항에 의거 계약취소주택(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계약취소주택이 19세대 또는 19호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제한기간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구분	일반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	일반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시 거주)	일반 2순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거주)	당첨자발표	서류제출기간 (일반/ 당첨자)	계약체결
일 정	11월 11일(월요일)	11월 12일(화요일)	11월 13일(수요일)	11월 20일(수요일)	11월 22일(금요일) ~ 11월 28일(목요일)	12월 2일(월요일) ~ 12월 4일(수요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일반공급 : 자격검증 필요서류 – * 청약신청자격 서류 (10:00 ~ 16:00)	계약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 소	■ 금융결제원 (KB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일반공급)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주택전시관)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18188호(2019.10.2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6개동, 총 273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조합원공급 220세대, 임대주택 22세대 제외)
▣ 입주시기 : 21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 분	아파트코드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타 입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비 고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일 반 분 양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민영주택	2019000892-01	055.9558T	55T	55.9558	19.6396	75.5954	55.8992	131.4946	35.3317	1	
	2019000892-02	059.9540T	59T	59.9540	20.2856	80.2396	59.8934	140.1330	37.5023	4	
	2019000892-03	077.9767T	77T	77.9767	25.5597	103.5364	77.8979	181.4343	48.3908	1	
	2019000892-04	059.9972	59	59.9972	20.2605	80.2577	59.9364	140.1941	37.5108	15	
	2019000892-05	077.9767A	77A	77.9767	25.5597	103.5364	77.8979	181.4343	48.3908	6	
	2019000892-06	077.9769B	77B	77.9769	25.6107	103.5876	77.8982	181.4858	48.4147	4	
합 계										31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 세대)

주택형 (타입)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 (2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후 30일내	2020.03.11	2020.06.11	2020.09.11	2020.12.11	2021.03.11	2021.06.11	입주지정일
55.9558T 55T	101동(2호)	TH층	1	759,037	364,963	1,124,0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112,400	224,800
59.9540T 59T	102동(6호) 103동(1,2,3호)	TH층	4	806,308	387,692	1,194,0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119,400	238,800
77.9767T 77T	103동(4호)	TH층	1	1,081,155	519,845	1,601,0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160,100	320,200
59.9972 59	101동(1,3,4,5호) 102동(1,2,3,4호) 103동(5호)	1층	9	774,569	372,431	1,147,0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114,700	229,400
		2층	5	782,673	376,327	1,159,0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115,900	231,800
	104동(1호)	1층	1	778,621	374,379	1,153,0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115,300	230,600
77.9767A 77A	101동(2호) 102동(5호) 103동(4호) 104동(4호)	1층	4	983,912	473,088	1,457,0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291,400
		2층	2	994,042	477,958	1,472,0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294,400
77.9769B 77B	102동(6호) 103동(1,2,3호)	1층	4	983,912	473,088	1,457,0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145,700	291,4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57%
83%
43%
53%
69%
31%
60%
종합등급 ★★☆☆
한 국 감 정 원 장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 캐슬 주택전시관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사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반드시 사전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하시기 바라며, 미예약 방문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1811-844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으며, 이 경우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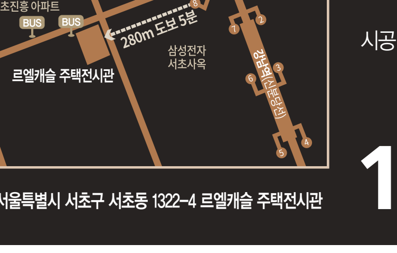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주택전시관

시행 대치제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LOTTE E&C

1811-8448